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박지혜・이재강・김원이

김병주 · 허성무 · 장철민

허종식 · 김동아 · 이재관

이건태 · 김영진 · 이상식

오세희 • 염태영 • 이소영

이언주 · 차지호 · 송재봉

김문수 • 권향엽 • 정준호

조인철 · 김용만 · 복기왕

서미화 · 김남희 · 위성곤

전진숙 · 민형배 · 허 영

강준현 • 박홍근 • 김정호

신영대 • 박수현 • 이훈기

이해식 • 김 현 • 박정현

박지원 · 양부남 · 서영석

최민희 · 황정아 · 오기형

이기헌・황 희・김성환

문금주 · 김영배 · 강훈식

노종면 · 김 윤 · 채현일

이병진 의원(55인)

제안이유

미국이나 EU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를 강

화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탄소중립산업법(NIA)」등을 제정 또는 추진 중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 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 를 위하여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탄소 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 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 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 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및 제17조).
- 아.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 제·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탄소중립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중 다음 각 목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의2가목에 따른 무탄소수소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만을 이 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 및 그 생산설비
-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의 에너지절약사업
- 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 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제품의 소재・부품 및 관련 서비스
- 2. "탄소중립산업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탄소중립산업 관 련 기술을 말한다.
- 3. "탄소중립산업사업자"란 제1호의 탄소중립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4.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란 탄소중립산업 및 탄소중립산업기술 (이하 "탄소중립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탄소중립산업사업자는 혁신적인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산업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 제5조(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①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3년 단위의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방향
- 2. 탄소중립산업등의 현황과 국내외 환경 분석
- 3.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 4. 탄소중립산업등 육성방향의 종합·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5. 탄소중립산업의 기술력 향상,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 과 관리·확산 등에 관한 사항
- 6. 특화단지의 지정계획 및 체계적 조성 · 지원과 관련한 사항
- 7. 탄소중립산업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탄소 중립산업등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탄소중립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탄소중립산업등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탄소중립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탄 소중립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탄소중립산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 5.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 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2. 탄소중립산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규제개선의 신청 등과 관련하여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 제9조(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 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 탄소중립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

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화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3.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특화단지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화단지 육성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 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 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시·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⑥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특화단지 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

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한 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특화단지와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탄소중립 산업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 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의 면제 확인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의 처리
 -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5.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탄소중립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 투자·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제4장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 제15조(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1. 탄소중립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 4.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 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탄소중립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 2. 국공립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 또는 사업자
- ④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및 절차와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 재정법」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3에 따 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3.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 2.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

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 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 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 2. 제1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전문인력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특화단지육성시책 수립과 연계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 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 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 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탄소중립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 3. 그 밖의 부대수입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탄소중립산업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탄소중립산업등 관련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25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등 등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26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탄소중립산업등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탄소중립산업등 관

런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 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

원

- 제30조(과태료)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